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0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김민전
강승규 · 성일종 · 조승환
김선교 · 강명구 · 유용원
박상웅 · 곽규택 · 박성훈
이성권 · 백종현 · 김도읍
안철수 · 이인선 · 정연욱
의원 (18인)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와 피해자들의 결정을 의결로써 결정함(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피해자의 직권결정,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사.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6조).

아.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7조).

자. 위원회는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여부를 심사·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9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1조).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아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성폭력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정신적 장애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

나. 제21조에 따라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규명결정으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다. 제27조에 따라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와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진상규명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하거나 받을 권리

5. 배상·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6.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7.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참여할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등의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제5조(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3.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들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자립정착금 등 보상 및 지원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7.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및 그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9. 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하였던 법인 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여부의 심사와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4. 국가폭력 사건 피해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국은 제21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보상심의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조직·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10조(진실규명결정의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기초로 제5장 및 제6장에 따른 보상·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② 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도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1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의 방식) ① 제11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4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신청이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6.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

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의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7조(증거보전의 특례)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최초의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20조(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조사결과와 피해자등의 결정을 의결로써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의 통지·이의신청 및 결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피해자, 제12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15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및 업무위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기관·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유해의 조사·발굴 및 손실보상

제23조(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

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피해자 유해의 인정 기준·절차와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그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5조제2항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피해자 결정 및 피해자 보상 등

제27조(피해자 직권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동의를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보상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
 2. 의료지원금
 3. 생활지원금
 4. 자립정착금
 5.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
-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③ 보상금등의 구체적 산정기준·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거나 제 21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급결정 및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의결로써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3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 인은 제3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3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금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등 계속적·정기적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차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보상금등의 분할지급 및 재산관리 교육 등) ①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재산관리·금융에 관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지급의 기준·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상

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이하 “임시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39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및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정 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②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금등의 관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신탁의 이용 지원 등 보상금등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해당,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구상권의 행사)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의결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3조에 따라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 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6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제45조(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지원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과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보상·지원 결정사항의 집행
2. 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의 시행
3. 피해자등 단체와의 협력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지원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2항에 따른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3. 사회적 활동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업무

③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제도의 개선
2. 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선
4. 집단수용시설등과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산 관리·감독체계의 개선
5.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집단수용시설등 운영 법인 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하였던 법인 등(이하 “운영법인등”이라 한다)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거나 운영법인등의 조직·재산·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법인·단체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 시 운영법인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승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추모·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0조(공익기금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등 지원 및 추모·기념사업을 위하여 공익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익기금은 무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주거·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 기준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차별·혐오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53조(피해자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기준의 결정, 추모·기념사업 및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4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제28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7조(자격사칭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제6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

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 명예
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52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임명·
위촉,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위
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